
노원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2026. 9.

... 목 차 ...

I.	구금고 지정 신청 개요	1
II.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9
	◆ 제안서 등 작성방법	10
	1. 신청서	11
	2. 제안서	12
	3. 증빙서류	23
	4. 부속서류	25
III.	참고내용	29
	◆ 노원구 금고관련 현황	30

I . 구금고 지정 신청 개요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3. 지정방법 :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6.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6. 9. 21.(월) ~ 9. 22.(화)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열람장소 : 노원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 2116-3461)
- 비치서류 : 2023 ~ 2026년 예산서 및 결산서
※ 노원구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종이 서류 제출 및 봉인용 사용인감 지참

- 접수기간 : 2026. 9. 23.(수)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노원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금고지정신청서 1부(원본 1부)
 -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항목

- 평가 세부항목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평가 세부항목 3-가. 관내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설치 대수
3-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의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 평가 세부항목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평가 세부항목 6-가. 그 밖에 사항(가.녹색금융 이행실적) 의 ‘탈석탄 선언여부’ 및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자료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는 각1부 별도제출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는 책자로 제출하되, 별도 USB에 파일로 저장하여 함께 제출

- 부속서류 각 1부(원본1부)
 - 각서1부, 사용인감확인서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첨부서류(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 ※ 부속서류는 별도 지참하여 금고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봉인 작업을 위한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 인감 확인서 지참
- 기타 노원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작성서식 p10 ~ p28 참조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7)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라. 정기에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1)
		18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2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6. 그 밖에 사항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 만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2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8. 평가방법

-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 평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9.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9명~12명(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 위 원 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구의원,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전산)

○ 운 영

- 금융기관 제안서를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되,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특히, 전산시스템 분야)」, 6-가 「녹색금융이행실적」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표는 제안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야 함 (발표 당일, 사원증 지참)

※ 프레젠테이션은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

(설명 10분, 질의·답변 10분)

※ 심의위원회 참석자 금융기관 별 발표자 포함 4명으로 제한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포함한 지정 후보금융기관 선정 및 구청장에게 평가결과 제출

10. 약정체결 및 인계인수

- 금고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구 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체결 시 금융기관은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약정 내용의 이행을 담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약정기간 만료 전 차기 구금고가 타은행으로 선정되더라도, 약정기간 중 약정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구금고가 변경될 경우, 인계인수 준비반 구성·운영 및 기존·신규 구 금고 금융기관 간 합동 근무 실시
- 새로 지정된 구금고 금융기관은 시금고와 협조하여 구민의 세입금 납부, 수납세입금 처리 등 세입업무 처리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존 및 신규 금고 상호간에 금고업무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후 인계인수토록 함

11.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 및 약정체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일체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기존 금고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신규 지정 구금고로 이전 또는 복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지정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 수납시스템 및 전산프로그램의 구축·관제·유지보수·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 구금고 은행은 노원구가 지정한 시기까지 노원구 영역시스템(H/W, 시스템S/W, 응용프로그램, 인프라장비 등 시스템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노원구로 이전 및 지식재산권 등록과 모든 비용을 부담.

12. 손해배상

○ 약정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 하거나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 어려움 등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노원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공모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손해배상액[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2030년까지 노원구에 출연할 금액의 연평균액 + ('25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 × 5%

* ' 25년 평균잔액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평균잔액

○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구금고 선정 금융기관은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을 제안서 내용대로 구현하여 2027. 1. 1.부터 정상 운영 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등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며 금고 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지연배상금 = '25년 일일 평균 수납 및 지출액 × 지체일수 × 연 15%

○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향후 노원구 금고 지정 공모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손해배상액[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2030년까지 노원구에 출연할 금액의 합계 + ('25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4)]×15%

* ' 25년 평균잔액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평균잔액

13.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은 우리 구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제안서 접수 시 신청 기관별 제안서 14부 및 증빙서류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 인감 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노원구청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합날인 후 노원구청 재무과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청 재무과(☎2116-3461)또는 myl16@nowon.go.kr 로 문의

14. 추진일정

- 서류열람 : 2026. 9. 21(월) ~ 9. 22(화)
- 제안서 접수 : 2026. 9. 23.(수)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 2026. 9. 30.(수)
- 금고지정 결과통지 : 2026. 11월 내
- 금고약정 약정체결 : 2026. 11 ~ 12월
- 금고 변경시 금고업무 인계인수 : 2026. 11 ~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 제안서 등 작성방법 〉

- 제안서는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제1장부터 항목 순서대로 작성
- 효율적 심사를 위해 페이지를 기재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하여 A4종으로 좌철함(A4 이외에는 A4크기로 접음)
 - 평가항목 중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나 “금고업무 관리능력(특히, 전산시스템 분야)”, 6-가 “녹색금융이행실적” 부분도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버전은 A4 횡상철로 14부를 작성하여 PT당일 지참하여 제출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이며, 발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하며, 발표 당일 사원증을 지참
- 노트북은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 비치된 노트북을 사용하되, 발표 자료는 USB에 저장 지참하며 음향은 지원되지 않음
- 제안서 내용은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안에 병기하고, 서식에 제시된 내용은 서식대로 작성하며, 주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의 하단에 기재
- 증빙서류 등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자료와 일치해야 하며 특히, 추진실적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편철하며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과 “사용인감” 을 날인하여야 함
- 제반 제출서류는 표지와 목차를 붙이고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하며, 숫자표기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으면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작성 기준일은 “2026. 7. 31.” 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별도로 기준 일자와 작성연도가 명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의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 중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와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 중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은 제안서와 분리하여 작성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 내 해당 평가 항목란에 부착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최대출자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점		전 화·담 당 자	
	전산실		전 화·담 당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1. 노원구 금고지정 제안서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2. 증빙서류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3. 기타서류 각 1부(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026년 월 일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2026. 9. .

관리번호 14 - (원본)
(사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제안서

금 융 기 관 명

1장 제안서 요지

- 제안서 내용을 5쪽 범위 내에서 요약정리

2장 구금고 운영 목적과 취지

- 구 금고 지정 신청의 목적과 취지를 간략히 기재
- 지정 시 구금고로서의 금고운영 기본방침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확실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3장 평가자료 작성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2026. 7월말 기준, 최근 신용평가 현황)

- 국외평가기관 (Moody's사, S&P사, Fitch)

구분	Moody's		S&P		Fitch		비 고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평가일자							
평가결과							

※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첨부 1)

- 국내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기준)

평가일자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비 고
평가일자				
평가결과				

※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첨부 2)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평가만 기입
기업신용등급(Issuer Credit Rating 기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단위 : %)

구 분	2023년(말)	2024년(말)	2025년(말)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2)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 **증빙자료 별도첨부(첨부 3)**
- 3) 제2금융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총자본비율’ 대신 ‘순자본비율’을 기재하되 증빙서류 제출

2. 노원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금리 제시는 **2026. 7. 31.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밀봉한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노원구 정기예금에 적용할 금리

정기예금 예치기간	제안금리 (A+B)	신규취급액 COFIX금리(기준)(A)	가산금리(B)	비 고
1개월	%	%	%	
3개월	%	%	%	
6개월	%	%	%	
1년	%	%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 2) 은행연합회에서 공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를 기준금리로 하며 ‘26. 7. 31. 기준으로 작성
- 3) 신규취급액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가산금리” 로 함
- 4) 이율 변경은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금리(신규취급액기준) 변경 시 신규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시 익일부터 적용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1) 노원구 공금예금에 적용할 금리

구 분	금 리	비 고
공금예금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 2) 공금예금이란 노원구 일상 예치금으로, 세입·세출계좌, 징수관, 지출원, 법인카드결제계좌, 일상경비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노원구 사업자번호(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포함)로 개설된 예금 일체를 포함함
- 3) 약정 2년후 시중금리 현저히 인상시 금리를 재약정할 수 있음

(2) 기업MMDA예금에 적용할 금리

구 분	제안금리 (A+B)	기업MMDA금 리(기준)(A)	가산금리(B)	비 고
기업MMDA예금	%	%	%	예치기간 및 금액제한 없음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한국은행 공표 “기업MMDA(잔액기준)” 를 기준으로 하며 2026.7.31.자로 작성

3) 제안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는 공금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함

4) 기업MMDA(잔액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기업MMDA(잔액기준)±가산금리” 로 하고 예치기간 및 금액은 제한이 없음

5) 이율 변경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 변경 시 신규 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다. 노원구 대출금리

(1) 일시차입 시 적용할 금리

구 분	제안금리(A+B)	단기COFIX 금리(기준)(A)	가산금리(B)	비 고
1년기준 차입금	%	%	%	

※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 “단기COFIX” 를 기준금리로 하며, 향후 노원구의 차입(일괄여신 한도 내 “공공일반자금대출” 한도거래를 의미)대출금리를 2026.7.31.기준으로 작성

3) 단기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약정체결은 “단기 COFIX±가산금리” 로 하며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은 면제이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지방채 인수금리

구 분	제안금리(A+B)	단기COFIX 금리(기준)(A)	가산금리(B)	비 고
지방채 인수금리(5년)	%	%	%	

※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고시 “단기COFIX” 를 기준금리로 하며 2026.7.31.자로 작성

3) 단기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약정 체결은 “단기COFIX±가산금리” 로 하며,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은 면제이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노원구 정기예금 만기경과후 3개월까지 적용할 금리

정기예금 예치기간	제안금리 (A+B)	신규취급액 COFIX금리(기준)(A)	가산금리(B)	정기예금 제안금리 대비 비율(00%)
1개월	%	%	%	
3개월	%	%	%	
6개월	%	%	%	
1년	%	%	%	

※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고시 “신규취급액단기COFIX” 를 기준금리로 하며 2026.7.31.자로 작성

3) 단기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체결은 기간별 정기예금 만기 후 적용이율 “신규취급액
COFIX금리 가산금리” 로 표시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설치 대수

○ 노원구 내 영업점 현황 ※ 증빙자료 별도첨부 (첨부 4)

- 2026. 7. 31. 기준 노원구 관내 영업점 현황을 기재하되, 지방세입금 (지방세+세외수입) 수납 등이 가능한 영업점만 기재(무인점포 제외) : 건물기준 작성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 에서 제외

구 분	합 계	영업점명	소 재 지	직원수(명)	비 고
노원구	○○개소	○○지점	노원구 ○○로(길) ○○		
		○○출장소			

※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등록된 수치와 일치하여야 하며 관내 영업점 분포도 뒷장에 첨부

○ 노원구 내 무인점포 수(2026. 7. 31. 기준)

구 분	합 계	소 재 지	비 고
노원구	○○개소	노원구 ○○로(길) ○○	

- ※ 1) **무인점포**란 은행 영업점 이외의 별도의 공간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여 2대 이상의 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점포 형태로 운영하는 장소를 말함
- “영업점 이외”란 영업점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장소를 말하며, 영업점의 부속공간에 있는 365자동화코너등은 제외함.
- 2)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가능하여야 함(은행 명의로 운영하는 것만 포함)
- 3) 동일건물 동일 층 내 또는 복수의 층에 있는 무인점포는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각각으로 인정함
- 4)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별책)
- 5)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표시

○ 노원구 내 ATM 수 (2026. 7. 31. 기준)

구 분	합 계	소 재 지	ATM 대 수	비 고
노원구	○○개소	노원구 ○○로(길) ○○	○○ 대	

- 1) 은행명의로 운영하는 것만 포함, 브랜드 제휴기기 및 영업점·무인점포 내 편의점에 설치된 기계 제외
- 2)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별책)
- 3)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표시
- ※ ATM은 현금자동입출기로 예금과 출금 기능을 수행하며, CD기능 외에 통장을 이용한 거래나 현금 또는 수표 등의 입금거래 등이 가능한 무인단말기를 말함

나.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 **증빙자료 별도첨부(첨부 5)**

(단위 : 백만원)

연도구분	수납건수	수납액	비 고
계			
2023년			
2024년			
2025년			

- ※ 1) 건수는 고지서 1매당 1건
- 2) 금액은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수납액만 기재
- 3) 인터넷 등 전자납부, 무인수납기 등 실적 포함

- 4)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표시
- 5) 증빙자료 별도첨부(첨부 5)
 - 금융기관별로 노원구 재산세과에 의뢰하여 받은 공문 첨부

○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납부에 따른 수납처리 현황
- * 인터넷뱅킹(은행) 또는 은행창구 등 납부매체별 수납처리 실적
- * 은행(지점) 수납부터 구금고로 실물장표 송부 및 공금계좌 입금까지 소요기간 등

다.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증진방안 프레젠테이션 준비

○ (실적) 그동안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 증빙자료 별도첨부(첨부 6)

○ (계획) 기존 서비스 이외에 추가 계획하고 있는 납부 편의 서비스 증진 방안

- (시간편의)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 (사고대비)과업 등 금고업무 중단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대책
- (취약계층 지원)장애인·어르신·외국인 등 디지털·언어·이동 접근성이 취약한 납세자 대상 온·오프라인 전채널 납부편의 제공 방안
- (매체확장)신기술을 활용한 신규매체 개발 또는 기존매체 확장
- * 빅데이터, AI등의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 * 모바일 등 여러 매체를 통한 대민 납부 편의 서비스 증진 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버전은 A4횡상철로 20쪽 이내로 작성
PT 당일 14부 지참하여 제출 (설명 10분, 질의·답변 10분)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 (실적)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자치단체 및 타기관 금고업무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포함)하여 사용중인 금고 전산시스템(운영프로그램) 현황
- (계획)향후 개발 예정인 전산시스템 및 발전방향
 - 세입·세출업무, 자금운용,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e-호조시스템과 e-뱅킹과의

연계 등 세출업무분야 시스템 구성도 포함)이 포함되어야 함

* 향후 개발 예정인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

- 기타,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계획 및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를 경우의 방안
- 금고 약정기간 종료 전 전산시스템(세입,세출,금고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유무형 자산 소유권의 노원구 이전 방안 및 차기 구금고로 시스템 이양 방안

※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 현황 증빙자료 별도첨부 (첨부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실적)자치단체 금고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직·인력구성 현황, 인력확보 및 직원 교육훈련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제출
 - 금고관리 업무수행 실적은 자치단체명, 취급기간, 취급 회계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약정서 사본 첨부 **약정서 사본 첨부 (첨부 8)**

【금고관리 업무수행 실적】

(단위 : 개)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 1) 최근 3년간(2023~2025년) 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
- 2) 1개 자치단체당 1회계만 표기
- 3) 1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중복 수행할 경우, 주된 회계 (일반, 특별, 기금 순) 기준으로 표기

【세부내역】

자치단체명	회계명	기간	비고
-○○특별시(광역시)	회계명 구분표시	(예시)	약정서 사본 첨부
-○○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동시 취급	‘23. 1. 1. ~	
-○○시·군·구	- 일반회계	‘26. 12. 31.	
순으로 작성	- 특별회계, ○○, ○○.....	(3년)	

※ 최근순으로 작성

- (계획) 향후 노원구금고 운영조직·인력구성 계획, 인력확보 현황 및 계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행정기관 내 영업점(지출대행 영업점포) 설치 계획

【지출대행 영업점포 운영계획】

행정기관명	지출대행 점포 소재지				비 고
	기 존		신 설		
	점포명	소재지	점포명	소재지	
계					

- 1) 행정기관 내의 설치일 경우에는 「소재지」란에 “청사 내 설치”로 표기
- 2) 행정기관 내의 설치가 아니고 주변 점포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주변점포 이용”으로 표기

※ 지자체 금고취급 경험을 포함한 조직·인력구성 및 인력확보 현황 관련 증빙자료 별도첨부 (첨부 9)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구금고(개인·금융정보 보호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구성,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운영방안
- ⇒ 인적보안, 위험관리, 보안감사, 전산실과 사무실 등 물리적 보안, 접근통제, 운영보안, 전자금융거래 보안 등

○ 전산보안시스템(H/W, S/W) 도입 및 운영방안

- 시스템 설치, 방화벽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관리 방법, 백업시스템, DR센터 등

○ 정보보호분야 인증 현황(국내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경우만 인정)(첨부10)

○ 금융전산사고 발생 현황 (2023년~2026년 7월말)

- 전산장애·침해사고·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고 등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사항 및 조치결과(최근3년간)

※ 증빙서류 별도첨부 (첨부 11)

○ 자체 보안점사교육 계획 및 결과(최근3년간)

라. 수납시스템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 서울시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과의 연계, 활용방안
- 수납이후 세입자료 항목별 분류, 집계 및 정산(배분) 처리 시스템, 수납자료 및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포함
- 시금고 수납시스템 및 노원구 재세정시스템 간 연계처리 방안 포함
- 도시철도공채 매출, 상환, 집계 업무와 관련 시금고와 구금고간 도시철도공채 연계 및 운영 비용 처리 방안

- 전산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비용 전액 구금고 금융기관에서 부담함
 - 시스템 지원(기술·비용 등) 및 유지보수 계획
 - 시스템 개편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계획
 - 차기(2031년) 구금고가 변경될 경우에 대비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어떤 외부요인과 상관없이 해당 금융기관 책임과 비용으로 수납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2027.1.1.부터 현수준으로 정상 운영되어야 함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노원구 내에서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금액으로 가능한 환산하여 기재하되, 정량화(금액환산)가 어려운 부분은 별도 구분하여 기재
(예) 재해복구 지원, 장학금 지원, 체육·문화행사지원, 지역 내 시설물 설치 및 지역환경 보전과 문화유산 발굴 지원 등
(단, 노원구민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대출·수신)은 자료 추출 및 검증이 어려워 제외)

【지역사회 기여실적 -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구분	건수	금액	비고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말			

※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 별도첨부 (증빙자료 없을 경우 평가미반영)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기여일자	기여내용	기여금액	수혜자
계				

※1)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증빙자료 없을 경우 평가 미반영)

2)기부영수증, 협약서 및 납부영수증 등 최종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지출결의서 등 내부회계처리 자료 불인정(제출자료 순서 일치)

3)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표시

증빙자료 별도첨부 (첨부 12)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현금출연만 인정하며 밀봉 후 인감날인

○ 노원구에 출연할 금액

【출연금】

(단위 : 백만원)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산투자비용,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프레젠테이션 준비

○ 탈석탄 선언 여부 ※ 증빙자료 별도첨부(첨부 13)

탈석탄 선언여부	선언일	비 고

※ 1)작성기준일 : 2026.7.31.

2)탈석탄선언은 금융기관 법인대표(금융지주 포함)가 선언식,기자회견 등 공개적·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선언한 경우 인정

3)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탈석탄 이행 및 석탄금융 지원 등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실적

※ 증빙자료 별도첨부(첨부 14)

- 탈석탄 등의 이행실적은 은행의 이행실적이며 그 범위는 국내로 한함
※석탄금융의 범위 :석탄화력PF대출,회사채인수,보험지원,지분투자,일반대출
- 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실적 집계자료 및 서울시 기후·ESG데이터 관리계획 등 제출(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여부(2026.7.31.현재)

※ 증빙자료 별도첨부(첨부 15)

【금융기관 (금융지주포함)의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개수)】

연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명	가입일	비고
계	총○개		

※ 1)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범위 :RE100, UNGC, SBTi, UNEP FI, UN PRI, TCFD, Equator principles, CDP, PCAF

2)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2026. 9. .

관리번호 14 - (원본)
(사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증빙서류

금 용 기 관 명

- 제안서 작성시 세부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및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아래 순서에 의거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요망**

【증빙서 제출목록】

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신용평가서 등 -한글번역문 첨부(첨부 1)
- 국내평가기관 신용평가서 등 (첨부 2)

1- 나. 주요 경영지표현황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율)

- 금융감독원등 해당감독기관에 제출한 자료 (첨부 3)

3-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설치 대수

- 노원구 영업점(무인점포, 간이점 제외), 무인점포 수, ATM 수 관련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자료 등 입증자료 일체 (첨부 4)

3-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2023~2025년 동안 노원구 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간수, 수납액 관련 입증자료) (첨부 5)

3-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현재까지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입증자료 (첨부 6)

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 금융기관에서 개발·사용중인 금고 전산시스템 현황 입증자료 (첨부 7)

4-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지자체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첨부 8)
- 지자체 금고취급 경험을 포함한 조직·인력구성 및 인력확보 현황 관련 입증자료 (첨부 9)

4-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정보보호분야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인증서 발급현황 목록 (첨부 10)
- 금융전산사고 발생 현황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보고자료 등 (첨부 11)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기여실적 관련 세부내역 입증자료 (첨부 12)

6-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탈석탄 선언 관련 입증자료 (첨부 13)
- 탈석탄 이행실적 및 석탄금융 지원실적, 녹색금융 이행실적 집계자료 (첨부 14)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관련 입증자료 (첨부 15)

2026. 9. .
관리번호 1 - (원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부속서류

금 용 기 관 명

1. 법인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부기(인터넷 도메인 기재)

2. 법인 개요

- 연 혁
- 주사무소 소재지
- 자본금 현황(최다 출자자 순)

(2026.7.31. 현재)

자본금 (납입자본금)	주요 주주현황(1%이상)			비 고
	주주명	직업	소유비율	

3.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사항

성 명	직 책	주요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 고

4. 첨부서류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23년, 24년, 25년 요약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 회계법인의 검토필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사본첨부)

각 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부적격 처리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구금고로 지정된 후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며, 추후 금고지정 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약정 포기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서울시 노원구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 손해배상액=[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2030년까지 서울시 노원구에 출연할 금액의 연평균액 + (2025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 x 5%

* '25년 평균잔액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평균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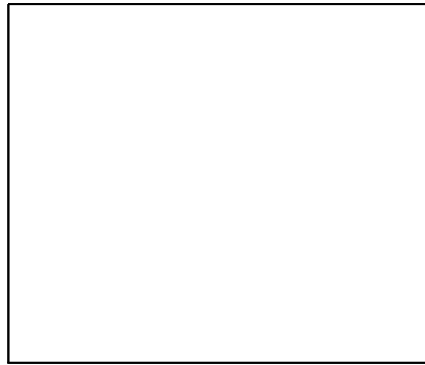
2026년 월 일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사 용 인 감 확 인 서



상기 인감은 당 기관의 지배인인 ○○○지점장 · 팀장(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붙임]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Ⅲ. 참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관련 현황

1. 재정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6), 기금(15)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 산		1,475,587	1,524,475	1,585,736
	일반회계	1,452,815	1,505,010	1,571,586
	특별회계	22,772	19,465	15,150
기금(운용액)		33,936	24,145	24,192

※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결산서상 예산현액 기준

※ 2025회계 기준 : 기금 15개

2. 여유자금 평균잔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40,353	178,077	159,359
	일반회계	216,886	156,352	140,764
	특별회계	7,818	3,200	4,781
기금(운용액)		15,649	18,525	13,814

3. 노원구 세출업무 관장 관서 및 부서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 지출원 - 지출업무 총괄(지급명령 발행)

【기관별 현황】

구 분		기관명		
구본청, 관서 등		• 노원구청 • 노원구의회사무국, 노원구보건소 • 기금업무 담당부서(15개 기금)		
동 주민 센터 (19)	월계1동	석계로 59	중계4동	덕릉로82길 50
	월계2동	초안산로5길 28	상계1동	동일로 1697
	월계3동	마들로 57	상계2동	상계로 118
	공릉1동	동일로186길 3-24	상계3·4동	덕릉로 859
	공릉2동	노원로1길 68	상계5동	한글비석로 434
	하계1동	노원로 261	상계6·7동	노원로 429
	하계2동	공릉로55길 88	상계8동	동일로227길 97
	중계본동	중계로 143	상계9동	한글비석로 487
	중계1동	한글비석로 279	상계10동	노원로 495 2층
	중계2·3동	노원로17길 56		

【기금업무 지출부서】

연번	기금명	부서명	연번	기금명	부서명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9	도로굴착복구기금	토목과
2	재난관리기금	안전도시과	10	노점상자립지원기금	도시경관과
3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경제과	11	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자원순환과
4	자활기금	생활복지과	12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자원순환과
5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도시과	13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6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과	14	고향사랑기금	자치행정과
7	양성평등기금	보육가족과	15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획예산과
8	육외광고발전기금	도시경관과			